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 조사 근거 법률로 상향 규정〉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91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 조사 근거 법률로 상향 규정	3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태년의원 등 10인

나. 제 출 일 : 2025. 3. 11.

다. 회 부 일 : 2025.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을 크게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외에 각각 법에 따른 타당성분석 또는 시행령에 따른 적격성조사를 통과해야 함.

실무상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적격성조사를 거친 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성조사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적격성조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적격성조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 조사 근거 법률로 상향 규정(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신 설> - (이하 생략)	○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주무관청은 제안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성조사를 하여야 함</u> - (이하 생략)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이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 지정을 요청하는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됨.

‘정부고시사업’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¹⁾에서 주무관청이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를

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함)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2천억원)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분석을 한 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법」에서는 주무관청이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²⁾, 세부 절차인 적격성조사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는 현행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민간투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³⁾.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이란 총사업비(제13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③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의뢰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타당성분석은 정부고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대비한 비용 및 재무적 측면의 우월성 분석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사업 추진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비용·서비스 내용의 최적조합을 모색하는 것을 말하고⁴⁾,

적격성조사는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함⁵⁾.

3. 그 밖에 제안서 검토 수행을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적·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낮다고 결정한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경제성 분석
2. 정책적 필요성 분석
3.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4)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조(정의) 이 기본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타당성분석”이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대비한 비용 및 재무적 측면의 우월성 분석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격성 판단”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 추진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비용·서비스 내용의 최적조합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조(정의) 이 기본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민자적격성조사”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6항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적격성조사 및 타당성 분석 비교]

구분	적격성조사	타당성 분석
대상	제안서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민간제안사업	모든 정부고시사업
수행주체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민투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수행내용	1. 타당성 판단 2. 적격성 판단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근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6항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비고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은 적격성조사와 유사하게 제안서검토 실시 (「민간투자법」 제7조 제3항)	-

자료: 기획재정부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취지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현행법령 체계하에서도 적격성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실익은 낮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특히, 헌법재판소도 과거 판례(2007헌바63(2009.10.29.))에서 민간제안사업의 세부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구(舊)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2항⁶⁾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6)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

위반되는지와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이 아니며, 민간제안사업의 구체적 절차에 대해서는 탄력적 규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를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⁷⁾한 바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에 있어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에 관한 사항은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에 있어 핵심적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타당성 분석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격성 조사의 경우에도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실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적격성 조사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⁸⁾에 따라 타당성분

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을 제외한다)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결정요지)

가.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토론과 합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규율영역인 사업의 제안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절차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헌법이 명문으로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한편 이는 전문적인 정책의 수립과 다양하고 급변하는 경제 및 행정 현실에 대응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의회유보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민간제안사업은 정부고시사업의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는 고려하기 힘들 수도 있는 민간의 자본과 효율적인 기술 및 경영기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바, 그 구체적인 절차의 형성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 및 행정 현실에 맞는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중 사업의 제안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절차의 자세한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구 민간투자법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르는 대통령령에는 정부고시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심의, 사업시행자 선정 시의 경쟁 정도, 사업비 산정의 방법, 공시를 비롯한 의견수렴절차 등이 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의 공익성에 비추어 정부고시사업에 준할 것이라는 점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8)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96조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성조사는 제65조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석과 동일하게 ‘타당성 판단, 적격성 판단,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의 단계로 수행하는데, 타당성 분석의 실시 근거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적격성 조사의 실시 근거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적격성 조사의 수행단계 중 타당성 판단은 해당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AHP)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방법과 동일하며⁹⁾, 적격성조사를 거친 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¹⁰⁾에도 불구하고 적격성조사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과 같이 적격성조사 실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5조(타당성분석)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분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단계로 수행한다.

1. 타당성 판단 : 해당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AHP)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 다만, 예타면제 판단을 받거나 예타비대상이면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등 타당성 판단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적격성 판단 이전에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적격성 판단 : 제1호에 따른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판단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이 확보되는 경우이거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재무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적정사업비, 사용료, 정부 재정지원규모 등을 산출하고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제시하며, 실행가능한 부대·부속사업 발굴 및 민자적격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계층화분석(AHP)의 평가방법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준용하되, 민간투자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9)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 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 10)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5조(대상사업의 유형) ③ 다만,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한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받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탄력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전술한 헌법재판소 판례(2007헌바63(2009.10.29.))에서도 민간제안사업 관련 절차는 다수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이 있고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음.¹¹⁾

한편, 동 개정안은 적격성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재정사업으로 전환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개정안의 심사 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11) (반대의견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영역인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절차는 구 민간투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볼 때 그 핵심적인 규율영역에 해당하며, 다수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권적인 중요성이 있고, 국가공동체의 이익과 관련한 중요 정책 형성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자가 공개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큰 영역으로서 법률의 단계에서 규정하여야 할 본질적인 사항이다. 특히 이러한 절차는 주로 다수의 이해를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격상 수시로 변화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대상은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구 민간투자법의 입법목적과 조문의 위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것은 사업의 제안부터 사업시행자지정까지가 그 내용이 될 것이라는 규율영역뿐이며, 민간 부문의 ‘제안’이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 사업의 시행여부와 사업시행자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며 정부고시사업과 비교하여 어떤 방식과 정도로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이 검토되는지 등, 정작 공적인 급부행정에 민간자본이 투입된다는 규율영역의 특성에 비추어 의미 있는 규율 내용의 대강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추가적으로, 동 개정안과 같이 제9조제3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개정할 경우, 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수정예시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② (생략)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u><좌동></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u><좌동></u>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 ----- ----- 제4항 ----- ----- ----- ----- ----- ----- ----- ----- -----.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제5항 ----- ----- ----- ----- -----.
⑥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u><좌동></u>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u>
③ ~ ⑥ (생략)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그 사항과 관련된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제9조제3항</u> 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 민간투자사업의 공고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와 관련된 사항	2. <u>제9조제4항</u> ----- ----- -----
3. <u>제9조제4항</u>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	3. <u>제9조제5항</u>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3

